

지원사업 협약서

- 사업명 : KOCCA-한국방송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
- 과제명 : KOCCA-한국방송학회 공동 세미나 기획 및 지원
- 총 사업 기간 : 2015. 04. ~ 2015. 12.
- 협약 사업 기간 : 2015. 08. ~ 2015. 10.
- 협약사업비(당해 연도)

- 지원금 : ₩ 10,000,000 원
- 사업자부담금 : ₩ 1,000,000 원

총 사업비 : ₩ 11,000,000 원

- 협약 당사자
(전담기관) : 한국콘텐츠진흥원
(주관기관) : (사)한국방송학회

- 주관기관 책임자 : 윤석년

위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(사)한국방송학회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의 목적은 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(사)한국방송학회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관리규정 등)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
1.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
2.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등

제3조(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) 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1의 “수행계획서”(이하 “수행계획서”라 한다)와 같다.

제4조(사업비의 지급) 한국콘텐츠진흥원은 (사)한국방송학회에게 별첨1의 지원 과제 수행을 위하여 협약사업비 중 지원금(이하 “지원금”이라 한다)에 의한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(단위: 원)

1차(90%)	2차(10%)	총 지원금
9,000,000	1,000,000	10,000,000

제5조(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) ① (사)한국방송학회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, 수행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.
② (사)한국방송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(사)한국방송학회는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정산잔액(불인정금액, 이자 포함)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6조(과제결과의 보고 등) ① (사)한국방송학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요구 시에는 결과보고서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(사)한국방송학회는 별첨1의 지원과제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① 본 협약은 관리규칙에 따라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
②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변경 지급할 수 있으며, 수행계획 변경에 대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요청 시, (사)한국방송학회는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약) 본 협약은 관리규칙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,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또는 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(사)한국방송학회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,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지적재산권 등의 귀속) 당해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, 보고서 판권 등은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과제 결과의 발표) (사)한국방송학회는 본 과제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발표, 홍보의 시기,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신의성실의 의무) 본 협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(사)한국방송학회에게 협조하여야 하며, (사)한국방송학회 또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(권리 · 의무 승계의 제한) (사)한국방송학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.

제13조(관계자료 제출 등) (사)한국방송학회와 과제책임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하는 자의 과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,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14조(관계법령 및 규칙의 준수 등) (사)한국방송학회는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관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5조(해석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석에 의한다.

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(사)한국방송학회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5. 8. 5.

(전담기관) 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 송 성 각



(주관기관) (사)한국방송학회

회장 윤 석 년

